

사업성 평가기관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
신청인	상호명	대표자
	영업소(사무실) 소재지	
	법인등록번호(생년월일/외국인등록번호)	전화번호

「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「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사업성 평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 및 확인사항

수수료	없음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법인 또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전자정보 동의 제출 시 같음) 2.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요건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가.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도 및 인력별 전문능력 증빙서류 나. 복수의 법인 또는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, 협력체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 등
심의· 처리기관 확인 사항	1. 법인 또는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전자정보 동의 제출시 같음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·처리기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제1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인	심의기관	처리기관
	「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에 따른 선정위원회	국토교통부장관

